

4.3.19 원격교육운영규정

제정 2010. 10. 21.
개정 2016. 08. 11.
개정 2018. 12. 04.
개정 2019. 06. 04.
개정 2020. 02. 28.
전부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07.
개정 2023. 03. 31.
개정 2024. 04. 01.
개정 2024. 12. 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45조,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원격교육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온라인 수업’은 정기고사(중간, 기말) 기간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100%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다만, 대면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 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3.31., 2024.04.01.>
2. ‘혼합 수업(Blended Learning)’은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며, 정기고사(중간, 기말) 기간을 제외한 1/3이상 해당하는 시간을 비대면으로 수업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을 대면 수업으로 운영한다.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는 제3장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출석 관리 및 성적평가가 이뤄지는 수업을 의미한다. 단, 대면수업의 보강을 비대면으로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개정 2023.03.31., 2024.04.01.>
3.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은 대면 수업의 보조 수단으로 사전에 수업자료를 제공하여 선행 학습 영상과 연계하여 학습자 활동 중심의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형태를 의미한다. <개정 2023.03.31., 2024.04.01.>
4. 삭제 <2023.03.31.>
5. ‘하이플렉스(HyFlex) 러닝’은 수업 전달 매체, 수업 방법,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의 혼합된 유연한 학습 방식을 의미한다. 대면 수업 개설이 원칙으로 실시간 비대면 수업 또는 비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유롭게 수업 유형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수업이다. <신설 2024.04.01.>

② 원격교육 운영시스템의 명칭은 「초당대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한다. <개정 2024.04.01.>

제2장 조직

제3조(설치) 원격교육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은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 추천을 받아 구성하되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회 구성은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무처장, 정보전산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07., 2023.03.31.>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03.31.>

- 1. 원격교육 운영계획 <개정 2023.03.31.>
 - 2. 원격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 <개정 2023.03.31.>
 - 3. 그 밖에 원격교육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03.31.>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원격교육 운영

제6조(수업개설 및 절차) ① 원격수업 개설 신청은 전임교원으로 하며, 비전임교원이 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03.31.>

- ② 각 학과장은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4.3.3)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학기별 개설과목 제출 시 원격수업 형태로 운영할 강좌를 표시하고, 원격수업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과목 및 담당 교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원격수업 형태 여부를 병기하여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 교과목 특성상 원격수업 운영이 어려운 강좌의 경우 제한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03.31.>
- ③ 삭제 <2023.03.31.>
- ④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원격수업 대상 과목은 관련 부처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개정 2023.03.31.>
- ⑤ 원격수업을 개설하는 교원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의콘텐츠 제작 및 편집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제7조(개설기준) ① 온라인 수업 개설 교과목은 학기당 교원 별로 담당 학점의 1/2이내 최대 6학점까지만 개설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한 경우 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성인학습자 전용 강좌의 경우에도 담당 학점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2024.04.01.>

- ②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콘텐츠는 원격수업 개설 시 콘텐츠 유지 또는 개편 여부 등에 대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온라인 수업의 경우 수강신청 또는 정정 마감일 기준 전공 교과목 10명, 교양 교과목 20명 미만의 강좌는 대면 수업으로 변경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혼합 수업은 일반 강좌 개설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03.31., 2024.04.01.>
- ④ 온라인 수업은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분반을 하지 않는다. 단, 수강인원이 제3항 기준 100명 이상인 경우 분반할 수 있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분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 ⑤ 삭제 <2023.03.31.>
- ⑥ 강의 영상의 질이 낮거나 강의 수준 및 운영이 부실하여 원격수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강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면 수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 ⑦ 원격수업 강좌의 강의 평점이 2개 학기 연속하여 하위 10% 이하에 해당할 경우 1년 동안 원격수업 개설을 불허한다. <신설 2023.03.31.>
- ⑧ 위원회는 원격수업 개설 교과목에 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원격수업 강좌의 요건을 심의하여 확정된 후 교무처에 통보하며, 강좌 요건의 미충족시 대면 수업으로 변경한다. 단, 수강신청 이후 교과목 및 담당 교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즉각 심의하여 교무처에 통보한다. <신설 2023.03.31.>

제8조(수업구성) ① 원격수업에 온라인 수업과 혼합 수업은 음성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된 15주차 이상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정기고사 기간의 경우 해당 주차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03.31.>

- ② 주차별 수업콘텐츠 강의 영상은 25분(1학점 기준)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주차별 총 학습 시간 (콘텐츠 재생시간, 학습활동 글쓰기, 토론, 과제, 퀴즈 등을 종합)은 50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03.31.>
- ③ 주차별 콘텐츠 구성 시 담당 교수의 강의 동영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학습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3.31.>
- ④ 저작권에 위배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외부 콘텐츠 활용 시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별 강의 영상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23.03.31.>
- ⑤ 하이플렉스(HyFlex) 러닝으로 제작된 동영상은 담당 교원(비전임 포함)이 수업 콘텐츠 강의 영상 제작에 미참여하였더라도, 다음 학기 온라인 수업에 활용 가능하다. 단, 수업 구성과 개설 기준은 본 규정의 조항에 따른다. <신설 2024.04.01.>

제9조(수업운영) ① 원격수업은 「초당대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 대학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점교류 원격수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03.31., 2024.04.01.>

- ② 원격수업은 수강신청 개시일 2주전까지 3주차 분량의 수업콘텐츠를 「초당대학교 이러닝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하며, 중간고사 개시일 전 전체 분량을 탑재하여야 한다. 단, 수강신청 이후 교과목 및 담당 교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03.31., 2024.04.01.>
- ③ 강좌 담당 교수는 학습자에게 충분한 학습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초당대 학습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활동 글쓰기, 토론, 과제 및 퀴즈 등 다양한 학습활동 및 학습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는 학습 자료는 저작권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03.31., 2024.04.01.>
- ④ 강좌 담당 교수는 「초당대 학습 관리 시스템」 질문 게시판과 쪽지, 메일함 등을 활용하여 학습 및 강의 운영과 관련된 학습자의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개정 2024.04.01.>
- ⑤ 신규콘텐츠 개발 확대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년도에 개발된 우수 수업콘텐츠 제작 교원(강사포함)을 시상한다.
- ⑥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교원(강사포함)에게는 교수법 관련 외부 연수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23.03.31.>
- ⑦ 온라인 수업 학습자들은 「초당대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하여 학기 내 2회 강의평가를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강의평가 결과는 교원(비전임 포함)에게 제공되어 온라인 수업 개선에 활용한다. 강의평가가 우수한 교원은 「초당대 학습 관리 시스템」에 우수 온라인 수업으로 등록되어 교내 구성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신설 2024.04.01.>
- ⑧ 「초당대학교 학습 관리 시스템」의 강의 불만 접수, 강의평가에서 제기된 수업 불편 사항에 대해 해당 교원(비전임 포함)은 즉시 개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원격수업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신설

2024.04.01.>

- ⑨ 100명 이상의 온라인 수업의 경우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수업에 인원을 배치하여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04.01.>

제10조(수강신청 및 제한) ① 수강신청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일반 교과목 수강신청 기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교과목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수강신청은 해당 학기 재학생에 한한다. 단, 군 이터닝을 활용하는 군 휴학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③ 학기별 온라인 수업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로 제한하며,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중 50% 이내로 한다. 장애인 및 성인학습자, 재직자의 경우 학기별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중 80% 이내로 한다. 단, 계절학기 및 군이터닝 수강자, 계약학과와 같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제11조(출석관리) 원격수업 콘텐츠 강의 영상 시간 기준 학습자의 수강 시점 및 학습 진도율에 따른 출결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03.31.>

1. 출석: 수업 기간 내 90% 이상 수강
2. 지각: 수업 기간 내 89%~50% 이상 또는 수업 기간 후 90% 이상 수강
3. 결석: 그 외의 경우

<전 호 신설 2023.03.31.>

제12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성적평가 규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강의계획서의 성적평가 방법(비율)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정기고사는 오프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수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정기고사에 대하여 원격 평가 또는 과제물 대체 등 다른 평가 방식 적용이 가능하나 원격 평가 시에는 「초당대학교 학습관리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4.04.01.>

제13조(강의평가) 강의평가는 강의평가 운영 규정을 준용하며, 대면 수업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3.03.31.>

제14조(관리 및 운영)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초당대 학습관리 시스템」 관리,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12.07., 2023.03.31., 2024.04.01.>

제4장 기 타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03.31.>

제16조(지적재산권) ①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학습영상물 및 교재는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보관하며, 지적재산권은 본교에 속한다. <개정 2022.12.07., 2023.03.31.>

②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사용은 허용하지 않으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 교수에게 있다.

제17조(콘텐츠 보관) 원격수업을 위해 개발된 콘텐츠는 최초 시스템 탑재 학기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보관 기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개설학과에 통보 후 폐기하도록 한다. <개정 2023.03.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진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0조에 대한 적용례) ① 성인학습자란 입학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로 본다.

② 재직자는 입학일 기준 만 25세 이상이면서 산업체에서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강좌 내용 및 구성<신설 2024.12.04.>

주차	구분	학점	강의내용
1	오프라인		
	온라인		
2	오프라인		
	온라인		
3	오프라인		
	온라인		
4	오프라인		
	온라인		
5	오프라인		
	온라인		
6	오프라인		
	온라인		
7	오프라인		
	온라인		
8	중간고사		
9	오프라인		
	온라인		
10	오프라인		
	온라인		
11	오프라인		
	온라인		
12	오프라인		
	온라인		
13	오프라인		
	온라인		
14	오프라인		
	온라인		
15	기말고사		

※ 각 주차별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점 기재